

용인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제정 1972. 10. 27 조례 제300호
개정 1996. 3. 1 조례 제 8호(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2005. 10. 5 조례 제65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용인시 리 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5>

제2조(기능) 용인시 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용인시 리(이하 “리”라 한다)의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성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사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생산에 관한 사항
6. 민방위 또는 리 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읍·면장, 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5. 10. 5]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리장이 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은 사업위원, 감사위원을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등의 임기)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리 개발위원의 전출,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보궐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5>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이하 “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 10. 5>

제6조(회의 및 이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5항의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을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석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시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서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5. 10. 5 조례 제656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